



학교 안팎에서 “사소한 장난”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 
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“학교폭력”입니다.

### 1. 법령상 개념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-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- "따돌림"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
- "사이버 따돌림"이란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,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,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

### 2. 학교폭력의 유형

유형	학교폭력예방법 관련	예 시
신체폭력	상해, 폭행, 감금, 약취·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(감금)</li> <li>▪ 신체를 손,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(상해, 폭행)</li> <li>▪ 강제(폭행, 협박)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약취)</li> <li>▪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유인)</li> <li>※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, 때리기,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</li> </ul>
언어폭력	명예훼손, 모욕, 협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(성격, 능력, 배경 등)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명예훼손)</li> <li>※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,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</li> <li>▪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(생김새에 대한 놀림, 병*,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)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모욕)</li> <li>▪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(죽을래 등)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(협박)</li> </ul>

유형	학교폭력예방법 관련	예 시
금품갈취	공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</li> <li>▪ 옷,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</li> <li>▪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</li> <li>▪ 돈을 건어오라고 하기 등</li> </ul>
강요	강제적 심부름, 강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속칭 빵 셔틀, 와이파이 셔틀 등</li> <li>▪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(과제 대행, 게임 대행, 심부름 강요)</li> <li>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(강요)</li> <li>※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,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</li> </ul>
따돌림	따돌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, 반복적으로 괴하는 행위</li> <li>▪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, 빈정거림, 면박주기, 겁주는 행동, 골탕 먹이기, 비웃기</li> <li>▪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</li> </ul>
성폭력	성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폭행·협박을 하여 성 행위를 강제하거나, 유사 성 행위,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</li> <li>▪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</li> <li>▪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,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</li> </ul>
사이버 폭력	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, 채팅,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</li> <li>▪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, SNS,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</li> <li>▪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, 위협하는 내용,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</li> <li>▪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, 음향,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</li> </ul>

**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, 불안이 지속됩니다.**  
**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.**  
**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**  
**부모님, 담임선생님,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.**  
**만약,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.**

### 3. 학교폭력 신고, 이렇게 하세요.

#### 가.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
-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,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.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,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.
-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.

- 학교폭력 신고는 ‘고자질’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.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,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.

#### 나.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-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, 장소,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.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단,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.

#### 다.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?

- 언제든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.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.
- 또 1588-7179, 380-46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24시간 주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- 특히,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,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

#### 가.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.

-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.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예요.
- 웬지 마음이 답답한가요?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,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.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죠!
- 어떤 방법으로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,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.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.

#### 나.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이렇게 해보세요.

- 원하지 않을 때는 “싫어”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.
-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.
-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,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.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.

#### 다.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.

-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,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.
-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.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,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.
-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,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세요.

-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,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.

**라.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.**

-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.
-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.
-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.
- “117” 전화번호를 기억하고,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.

**5.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**

**가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(1호)**

-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.

**나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, 보복행위 금지(2호)**

-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.

**다. 학교에서의 봉사(3호)**

- 화단정리, 교실의 교구정리, 화장실 청소,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.

**라. 사회봉사(4호)**

- 복지시설,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.

**마.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(5호)**

-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**<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는 조치>**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▪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|        |      |
| ▪ 학교에서의 봉사                   | ▪ 사회봉사 |      |
| ▪ 출석정지(기간제한 없음)              | ▪ 학급교체 | ▪ 전학 |

**바. 출석정지(6호)**

-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 경우,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, 누적될 경우 유급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.
- 특히, 다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‘출석정지’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.

**<<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>>**

- ▶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·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
- ▶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
- ▶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

### 사. 학급교체(7호)

-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,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.

### 아. 전학(8호)

-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. 학교장의 요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님이, 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이 상당한 거리를 둔 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키게 됩니다.

### 자. 퇴학처분(9호)

-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,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. 단, 의무교육과 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 차.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

-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특기사항·출결상황 특기사항·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합니다.

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	가해학생 조치사항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1항	
학적사항 특기사항	• 8호(전학)	• 9호(퇴학처분)
출결상황 특기사항	• 4호(사회봉사) • 6호(출석정지)	• 5호(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)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	• 1호(서면사과) • 3호(학교에서의 봉사)	• 2호(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) • 7호(학급교체)

### 카.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

-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가해자 측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한 후, 가해자 측에 법적 지불 책임을 요구[구상권 행사]하게 됩니다.

## 6.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해학생 생활지도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와 함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.
-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'봉사활동', '창의적 체험활동 상황', '행동발달 및 종합의견' 란 등에 충분히 기록합니다.

## 7.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

단계	처리 내용	비고
<p>폭력 사건 발생 인지</p>	<p>사건현장 목격, 117신고센터 통보,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, 학생, 학부모 등은 <b>학교폭력 전담기구(책임교사 등)</b>에 신고</p>	
↓		
<p>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, <b>학교장, 담임교사</b>에게 보고한 후 <b>가·피해학생 학부모</b>에게 통지</li> <li>▪ 사안이 중대한 경우, 학교장 및 심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</li> </ul>	<p>학교폭력 전담기구</p>
↓		
<p>즉시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</b></li> <li>▪ 신고·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</li> </ul> <p>&lt;&lt;피해학생&gt;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b>성폭행</b>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,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치유</li> <li>▪ 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</li> </ul> <p>&lt;&lt;가해학생 &gt;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·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<b>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</b></li> <li>▪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, 「<b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</b>」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,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</li> </ul>	<p>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</p>
<p>사안조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·피해학생 면담, 주변학생 조사, 설문조사,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</li> </ul> </li> <li>▪ 가·피해학생 심층상담</li> <li>▪ <b>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</b></li> </ul>	<p>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</p>

↓		
가·피해학생 부모면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,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</li> </ul>	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
↓		
처리방향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</li> </ul>	학교폭력 전담기구
↓		
처리방향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</li> </ul>	학교장
↓		
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</li> <li>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·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</li> </ul>	심의위원회
↓		
결정통보 및 재심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</li> <li>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</li> </ul>	학교장
↓		
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, <b>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</b> 해야 함</li> <li>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<b>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</b></li> <li>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</li> </ul> </li> <li>가·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, 재활치료, 생활지도 등 실시</li> <li>가·피해학생 소속 학급,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</li> </ul>	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

2023년 9월 8일  
경희고등학교장